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2008년 05월 02일 제정

2012년 03월 07일 개정

2015년 01월 19일 개정

2016년 08월 08일 개정

2017년 05월 26일 개정

구 분	직 책	서 명
승 인	협 회 장	
검 토	책임경영자	
작 성	품질책임자	
제 정	2008 년 05 월 02 일	
개 정	2017 년 05 월 26 일	



**사단법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Korea Flat Glass Industry Association**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
제2조 적용원칙 .....	1
제3조 정의 .....	1
제2장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등	
제4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	2
제5조 단체표준인증위원회 .....	2
제6조 공평성위원회 .....	3
제3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7조 단체표준의 제정·등록 .....	4
제4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제8조 인증단체의 요건 .....	5
제9조 인증단체의 조직 등 .....	6
제10조 인증단체의 직원 등 .....	6
제11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 .....	6
제12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	7
제13조 시험검사의 위탁 .....	7
제5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제14조 단체표준인증 등 .....	8
제15조 인증심사기준 .....	8
제16조 단체표준인증신청 등 .....	8
제17조 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	8
제18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	9
제19조 공장심사 .....	9
제20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	10
제21조 제품심사 .....	10
제22조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	11
제23조 <i>제품시험표준의</i> 인증 .....	11

제24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	11
제25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	12
제26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	13
제27조 인증 추가 또는 변경 .....	13
제6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	
제28조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요건 .....	14
제29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15
제30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	15
제7장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제31조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16
제32조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 .....	17
제33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	17
제34조 문서의 비치 및 보존 .....	18
제35조 보고 등 .....	18
제36조 처분 .....	18
제37조 인증의 취소 .....	18
제38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 이의제기 분쟁처리 등 .....	19
제39조 인증수수료 등 .....	19
제4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	19
제41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	19
제8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2조 표준화활동 촉진 .....	19
제43조 단체표준의 전환 .....	19
제44조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등 .....	20
제45조 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 .....	20
제46조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	21
<b>부칙</b>	
제1조 시행일 .....	21

## 별 표

<별표 1> 단체표준인증심사 기준 .....	22
<별표 2> 인증심사 결과 판결 기준 .....	49
<별표 3>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	50
<별표 4>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 .....	51
<별표 5> 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	53
<별표 6> 품질방침 .....	54
<별표 7>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	55

## 별 지

<별지 1> 위촉장(심사,인증) .....	56
<별지 2> 위촉장 .....	57
<별지 3> 회의록 .....	58
<별지 4>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 .....	59
<별지 5>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 .....	60
<별지 6>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 .....	61
<별지 7> 단체표준 인증신청서 .....	62
<별지 8> 단체표준 인증서 .....	63
<별지 9> 단체표준 인증심사대장 .....	64
<별지 10> 공장심사보고서 .....	65
<별지 11> 단체표준 제품인정서 발급대장 .....	78
<별지 12>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79
<별지 13> 특별공장심사 신청서 .....	80
<별지 14> 지위승계신고서 .....	81
<별지 15>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신청서 .....	82
<별지 16> 우수 단체표준 제품 확인서 .....	83
<별지 17> 단체표준인증 공장관리기록부 .....	84
<별지 18> 단체표준인증제품( )년도 생산실적보고서 .....	85
<별지 19> 서약서 .....	86
<별지 20> 단체표준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서 .....	87
<별지 21> 이의제기 및 불만관리대장 .....	88
<별지 22> 이의제기및 불만신청/처리서 .....	89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2008년 05월 02일 제정  
2012년 03월 07일 개정  
2015년 01월 19일 개정  
2016년 08월 03일 개정  
2017년 05월 26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및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사업)8항, 제28조(이사회 의결 사항)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단체표준 제품 및 제품시험표준의 인증, 우수단체표준제품과 확인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단체표준 인증관련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하 "일반요구사항"이라한다)에 기반하여 작성 하였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 류가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류, KS Q ISO/IE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제조자, 판매자(시공) 등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등록한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 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단체표준 제품의 관한 시험.분석.검사.측정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5. 제품시험표준 인증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6.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 제 2 장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등

제4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①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 3.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단체표준 제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 2.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공인 시험 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5.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④ 협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⑧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심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⑪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으로 한다.
- ⑫ 심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단체표준인증위원회) ① 인증단체는 단체표준제품 인증 운영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단체내에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단체표준 인증의 운영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 2.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4. 이의 신청(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 6. 인증평가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단체표준 인증의 결정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영리적, 재정적, 기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성이 확보된 자이어야 한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
  2. 학계
  3. 소비자 단체
  4. 시험검사·전문기관
  5.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6. 단체표준 인증평가 전문가
  7. 인증단체 상근책임경영자
- ④ 협회장은 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제 1호 서식]의「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협회의 상근책임경영자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⑥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증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심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외 서식은 심사위원회 서식을 사용한다.
- ⑪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 ⑫ 인증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46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공평성위원회)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증단체내에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3. 인증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사항
    - 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한 인증위원회 활동
    - 나. 적절하고 공평한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 다.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회장에게 보고
  4. 기타 제품인증 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 ③ 공평성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기관(당연직) 또는 관계기관
  2. 학계
  3. 소비자 단체
  4. 공급단체



5. 적합성평가 전문가

6. 인증단체 상근책임경영자

- ④ 협회장은 공평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협회의 상근책임경영자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⑥ 공평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⑧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심의 내용은 [별지 제 3호 서식]의「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⑩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단체의 품질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 ⑪ 공평성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46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7조 (단체표준의 제정·등록) ① 협회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회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개정,폐지)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3. 참고문헌 및 자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 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별지 제5호 서식]의「심의 의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심의 완료통보서」로 통보 받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⑦ 협회장은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⑧ 협회장은 확정된 제6항의 단체표준안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 단체표준활동 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SPS-고유번호-일련번호」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번호를 따른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에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보급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외국 단체표준번호도 함께 병기 할 수 있다.
- ⑩ 협회장은 제8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 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⑪ 협회장은 확인,개정 또는 폐지된 단체 표준에 대하여 확인,개정 또는 폐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 표준 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무국에 확인, 개정 또는 폐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 4 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제8조 (인증단체의 요건) ① 협회는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2명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한다)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받은 국가교정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기관 및 공인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협회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단체의 조직 등) ① 협회는 인증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인증업무규정 및 품질문서를 포함하여,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협회장은 공평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방침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6]와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별 품질문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KS Q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 등을 말한다.
- ④ 협회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의뢰(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인증단체의 직원 등) ① 협회장은 제품인증, 적용표준 등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 심사원 등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인증단체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인증단체의 관리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 ② 인증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사항
  3.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담당자 및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인증서의 재교부 및 지위승계
  6. 인증 업체에 대한 처분
- ③ 협회의 단체표준 담당자는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책임자 및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1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협회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제품검사원은 제12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⑤ 협회의 담당자는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 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인증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단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증명사진 2매
  3.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 ③ 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심사원등록 및 이력카드」에 등록관리 한다.

④ 협회는 심사원의 자격 신청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심사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6.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준용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⑥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2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①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품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 (시험 검사의 위탁) ① 협회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 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같음한다.

## 제 5 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제14조 (단체표준인증 등) ① 단체표준의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시공)하는 자는 협회장으로 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협회장은 단체표준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요구사항과 제품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5조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서비스,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제 26조제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인증심사기준)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이하 "인증심사기준" 이라 한다.)은 [별표 1]「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과 같다. 다만, 단체표준별 심사기준은 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이하 "품목별/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은 협회가 따로 정한다.

② 협회장은 인증심사기준을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 라 한다.)에 대해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사후관리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체표준 인증신청 등) 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단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1.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단체표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사업장심사가 인증추천 불가에 해당되는 부적합인 경우 3개월간, 단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보고서를 4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6조 제1항, 제3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개월간, 단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보고서를 4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매(시공)업체는 공급(외주제작)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외주업체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방화유리 인증신청 대상업체는 방화유리, 금속제창틀, 문틀 일체를 관리 판매(시공)하는 업체에 한한다.)

③ 협회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다.

제17조 (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장은 관계 서류를 폐기한다. 또한 납부 받은 수수료는 다음에 따라 처리 한다.

1. 심사 계획 수립 통보 후 심사예정일의 7일전 과 천재지변이나 법적인 문제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 그 외의 경우는 기본수수료의 1/2를 환불한다.

2. 심사가 진행도중 중단 및 철회하는 경우는 기본수수료의 1/2과 진행된 일수만큼의 심사원수당과 출장비를 제외한 비용을 환산하여 환불한다.

②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18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① 협회장은 인증신청자가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제품심사결과 모두가 적합한지 여부를 제5조(단체표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인한다.

②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회 소속 심사원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제품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④ 협회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공지하고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심사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협회는 공장심사 결과 공장심사보고서 6. 보완보고서 내용에 대한 7. 보완 개선조치보고서로 개선이 완료할 때까지 단체표준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의 보완보고서 사항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3. 최초인증의 경우 인증신청자가 보완개선조치보고서를 공장심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단체는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 인증단체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25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 불가 또는 부적합(불합격)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화유리의 차열, 비차열 내화시험은 금속제 창틀, 문틀과 유리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이에 인증심사시 방화유리 업체 및 금속제 창틀, 문틀을 생산하는 업체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9조 (공장심사) ① 공장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는 최초인증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심사, 특별공장심사 및 사후심사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 일수는 아래와 같다 , 다만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업체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사전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인증심사 또는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증단체가 판단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규인증 : 1개~2개 품목일 때 2일, 3개 품목이상은 3일

2. 신규인증 불합격 후 1년 이내에 재 신청시 1개~2개 품목일 때 1일, 3개 품목이상은 2일

3. 정기심사, 공장이전심사, 사후심사 , 특별공장심사, 제품시험표준심사 : 1개~2개 품목일 때

4. 사후재심사: 사후심사결과 경결함으로 불합격된 경우 제품심사를 위해 1일 1인.

1일, 3개 품목이상은 2일, 종류추가 심사와 사후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① 인증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료채취 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종류·등급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는 1.품질경영,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 또는 합격하였으나 제21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단,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장심사를 행하여야 함)
3. 단체표준 품목중 제품시험표준의 경우 공장심사 전체항목(1~6항목)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인증 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KS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S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현황 등 K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제품심사의 시료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등을 확인하여 제품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5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⑦ 항3. 에 의거 단체표준인증대상 제품으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방화유리 및 금속제 창틀,문틀을 공급(외주제작)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업체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급 받는 업체 또한 심사항목중 1.품질경영,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와 방화유리 및 금속제 창틀, 문틀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의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체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표시인증을 받은자는 심사항목중 1.품질경영,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⑦ 방화유리 제조업체가 외국소재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최근 2년 이내 발급받은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1조 (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제조공장에서 심사당일 제품재고 또는 생산중인 제품중에서 채취한다.

② 심사원은 채취한 시료에 서명한 후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품제조 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할 때
  2.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할 때
  3. 시료의 이동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
- ③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공장심사에서 보완 사항 발생시 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시료 채취를 보류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인증단체에서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단체에서 시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 ⑤ 협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검사원 자격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4항의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시, 시험기관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심사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⑥ 협회장은 시판품조사, 제품심사, 소비자 고발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표준미달 제품 품질의 경우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분류하며 세부사항은 [별표4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 2. 개별 기준」에 따른다.
- ⑦ 방화유리의 제조업체가 외국소재 공장의 경우 제품심사를 최근 2년 이내 발급받은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2조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5조 ⑦ 항3. 에 의거하여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단체표준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시험의 경우

제23조 (제품시험표준의 인증) ① 단체표준 제품시험표준 인증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협회로부터 제품 시험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제품 시험표준의 종류: 강화유리 히속 테스트방법
  2. 제품 시험표준을 제공하는 사업장
- ② 인증신청은 제16조(단체표준 인증신청등)에 따른다.
- ③ 인증심사는 제18조(단체표준 인증심사)에 따르며 1.공장심사는 면제하고 2. 제품심사만 시행한다.
- ④ 인증심사일수는 최초인증심사는 1일 2인이 심사한다.  
기타 사항은 제19조(공장심사) 및 제21조(제품심사)에 따른다.
- ⑤ 이외의 사항은 단체표준인정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①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에서 보완/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6.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인



증신청자에게도 6.보완/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 보완/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보완/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7.보완/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 작성하여 심사원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부적합 발생시 : 4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공장심사 사항중 "핵심품질"에 대한 「6.보완/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결과를 「7.보완/부적합 개선조치보고서」로 1차 확인하고 사후심사시 이행여부를 재 확인한다.

④ 공장심사의 경우 평가 결과 100점 만점중 총 평점이 60점(제20조에 따라 공장심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60%)미만일 경우 해당 심사원은 신청업체에 불합격으로 인증위원회 추천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불가로 결정된 업체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7. 보완/부적합 개선조치보고서를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⑥ 인증 불가로 결정된 업체는 불합격 사유를 해소하고 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의 결정은 제18조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정한 단체표준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협회는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심사 결과 및 「7.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검토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③ 협회는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0호 서식]「단체표준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협회와 체결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자의 인증제품광고에 관한 사항

5. 인증받은자의 인증단체에 보고사항 및 시판품 조사, 제품수거, 판매중지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7.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단체가 인증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⑤ 협회는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 받은자에게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인증종료(취소포함)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2.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받은자의 공장명(회사명) 및 소재지

3.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4.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

⑥ 협회는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단체표준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인증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받은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⑧ 제품인증서를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다음 각호의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및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회사명을 변경 할 경우
2. 양도 양수 또는 합병
3. 법인으로 전환
4. 상속에 따른 증여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5. 단체표준인증서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6. 행정구역 변경 및 도로명 변경에 따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7.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제26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①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단체명
6.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표시판을 각각 게시 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는 [별표 3] 에 따른다. 다만 협회의 자체인증표시 도표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체인증표시 도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무국에 도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7조 (인증 추가 또는 변경) ① 인증받은자가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결정 시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등급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협회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당 종류·등급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여 그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 경우, 제20조(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1항에 따라 1.품질경영,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를 생략할 수도 있다.
- ⑤ 협회는 제25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에 따라 인증결정 시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인증받은자가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원자재 및 부자재 등)을 협회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협회는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협회는 해당 제품(품목)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

제28조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등) ①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 (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일 것
2. 제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록)에 따른 표준을 제4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인된 표준을 보유 할 것
3. 단체표준인증 접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등 단체표준인증업무를 3개월 이상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을 보유 할 것
4. 제2호에 따른 단체표준 제품 시험설비를 보유 할 것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한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②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으려는 인증단체는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

### 협력협약체결서

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 현황 및 관계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9. 제33조 3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
  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제29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일 것
  2.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인증단체의 단체표준 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25조, 제33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환, 재발급 및 지위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 ⑦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인증업체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내지 제6항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 준용한다.
- ⑨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도 자동 취소되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발급 확인심사가 진행된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표준인증 최초인증일자 기준으로 잔여 1년으로 한다.

제30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일수는 1일로 한다.

- ② 제21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심사절차에 이를 준용 한다. 단, 「국가

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시험비용 및 운반비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당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제15조(인증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의 인증 구분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품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품심사를 받아 합격을 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3항의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7 장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제31조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협회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공장 및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인증스킴,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의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품시험표준 인증의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 제품시험표준공장 및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인증스킴,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의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당해 연도 초에 제품 및 제품시험표준 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별표 4]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개선권고, 표시정지, 인증취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후 같은 해에 사후심사(정기,사후)가 도래할 경우는 공장이전심사로 대체한다.

⑧ 인증을 받은 공장이 사후심사(정기,사후)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서식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달 이전에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⑩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정기심사를 갈음하고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⑪ 사후관리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1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5조(보고등) 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5. 공장을 이전 한 경우
  6.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체 등 납품수요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7. 사후관리 실시결과 [별표 4]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중결함 이상으로 표시정지를 받은 경우
- ② 시판품 조사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시료채취는 인증 구분(종류,등급)별로 실시하고 시료의 양은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어려운 품목은 인증 공장에서 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 ③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는 제19조, 제21조,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자는 인증단체로 [별지 제13호 서식] 「특별공장심사 신청서」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제1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단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34조 (문서의 비치, 보존) ①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② 협회는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관계 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시 제출받은 서류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위원회 평가 서류
4.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5.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단체표준인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 (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45일 이내에, 제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제36조에 따라 부적합 처분에 대한 개선조치 보고서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간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생산실적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우수 단체표준제품에 한함)

제36조 (처분) ① 협회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시판품조사와 특별공장심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인증 받은자에 대한 처분은 [별표 4]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부적합 보고서에 대하여는 「7.보완/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로 1차 확인하고 사후심사시 이행여부를 재 확인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결과 처분기간 내에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⑤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별표 4] 처분기준에 따른다.

제37조 (인증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36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제36조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② 인증받은자는 인증 받은 표준이 폐지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제38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 이의제기 분쟁처리 등)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그 제품의 수리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체표준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불만.이의제기.분쟁처리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인증업무에 관련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해당심사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해 접수 및 처리 등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 및 불만 관리대장 (별지 제21호) 2. 이의제기 및 불만 신청/처리서 (별지 제22호)

⑥ 협회는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에 대한 결과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39조 (인증수수료 등) ①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협회장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 제 8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2조 (표준화활동 촉진) 협회는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사무국에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단체표준의 전환) ①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표시제품이 특정분야에 국한



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인증(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④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어 KS인증서 보유업체가 단체표준인증서로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 보유업체는 [별지 제12 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KS인증서
2. KS정기심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 수료증
4. 제조설비, 검사설비(교정성적서포함) 목록
5.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KS로 인증 받은 자가 KS표시품 생산 중단보고를 한 경우, 생산 중단보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S정기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생산개시일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공장심사를 받아야한다.

⑥ KS인증 공장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으로 전환 된 경우에는 제31조 7항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KS심사 후 단체표준인증서로 전환 발급 받는다.

⑦ 제4항에 의거 접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는 [별지 제 8호 서식] 단체표준표시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⑧ 제4항에 의해 단체표준 표시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한 공장심사 주기는 제31조 7항에 따른다.

제44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①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 품질경영기사 .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한 자

②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3년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및 [별표2]에 의거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는 [별표 7] 서식과 같이 정하며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간부교육(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3. 단체표준담당자 교육

#### 4. 인증관리담당자 교육

③ 제2항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2]에 따르며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심사·인증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별표 5] 1. 에 따른다.

② 심사원의 심사비용 및 출장비는 [별표 5] 2. 수수료등의 "나"와 "다"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① 이 규정은 2008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심사 주기에 관한 경과 조치) 2016년8월8일 이후 사후심사(제품심사)를 받은 인증업체의 제품심사 주기는 매2년으로 적용하며, 최초인증을 받은 공장은 인증 받은 다음해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제31조(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규정 시행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또는 다른 법률을 따른다.

# 인증 심사 결과 판정 기준

## 1. 적용범위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2. 판정기준

### 가. 공장심사(인증심사/사후관리)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80%) 이상일 경우 합격, 60점(60%) 이상일 경우 보완, 60점(6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핵심필수항목 : 5.0점, 만족시 5 점, 보완 2.5점, 부적합 0점
  - 일반품질항목 : 2.5점 만족시 2.5점, 보완 1.5점, 부적합 0점

### 나. 제품심사

- ① 인증/사후관리(정기심사,사후심사,특별공장심사,제품시험표준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 시판품조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비고]** 인증심사기준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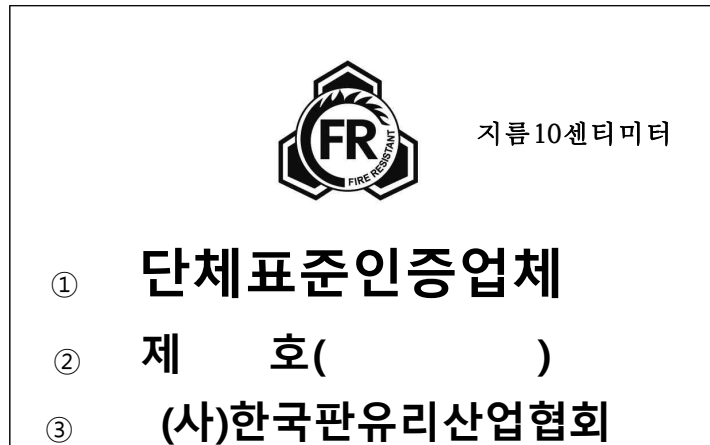
##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 1. 단체표준 인증마크

		
SPS-KFGIA-001-1749	SPS-KFGIA-002-1799	SPS-KFGIA-003-2005

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2항 6호 [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에 의한다.

### 2. 표 시 판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2cm 크기로 한다.
2.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3. 마크및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마크의 경우 제품별로 상이함)
4. 표시판 상하부에 연회색으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음영을 줄 수 있다
5. 인증 품목이 2개 이상인 때는 가로 45cm, 세로10cm의 보조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 품목명만을 기재하여 게시하되, 그 위치는 정문표시판 아래에 게시한다.
- 6 ①의 크기는 세로의 12분의 1 문자는 고딕체로 한다.  
②의 크기는 세로의 15분의 1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③의 크기는 세로의 12분의 1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 인증 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또는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제33조 1항에 따라 인증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라. 제36조 1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제품시험표준*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제34조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나.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1)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6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라.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제24조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결과가 60점 이상 ~ 80점 미만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결과가 60점 미만	표시정지 (3개월) 개선권고	인증취소	
바. 제21조에 따른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부적합 항목이 발생된 경우	재심사 재시험		
(2)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라 처분 (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	경결함일경우	개선권고 사후재심사	인증취소
	중결함일경우	표시정지 (3개월) 특별공장심사	인증취소
	치명결함일경우	표시정지 (6개월) 특별공장심사	인증취소

### 3. 표준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의 품목별 세부사항

(제36조 1항관련)

표준번호	표준명	검사항목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비고	
SPS-KFGIA-00 1-1749	방화유리	1.겉모양	○			유리	
		2.만곡	○			유리	
		3.모양 및 치수	○			유리	
		4.내화성능		○		완제품	
		5.표시	○			유리	
SPS-KFGIA-00 2-1799	가스주입단열 유리	겉모양	○				
		모 양	○				
		이슬점		○			
		단열성능	○				
		가스 함유율	80≤함유율 %<85	○			
			70≤함유율 %<80		○		
			함유율 %<70			○	
		내후성후 누출율 5%초과	가스함유율%≥80	○			
			가스함유율%≥70		○		
			가스함유율%<70			○	
		광학박막성능의방사율	○				
치 수	○						
표 시	○						
SPS-KFGIA-00 3-2005	강화유리 히 속 테스트방 법	겉모양	○				
		히속테스트		○			
		치 수	○				
		표 시	○				

## 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 1. 제4조 심사 위원회 및 제 5조 인증위원의 수당지급 기준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 대해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10만원/1인 1시간당 기준**

### 2. 수수료 등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심의 등 인증단체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기본수수료: 1.최초: 50만원/품목당 25만원/품목추가 2.사후,종추: 30만원/신청시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요령 제15조 별표 1 나 . 기준)
다. 인증심사원 수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수당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수당으로 추가할 수 있다.	260,000원/1인1일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요령 제15조 별표 1 다 . 기준)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제품시험에 대한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시험·검사를 위한 실비로서 인증단체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으로 정한 금액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금액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책정한 제품시험수수료
마. 시료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신청업체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비 정산한다.

## 품 질 방 침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단체로서 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 신뢰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선언한다.

### ▣ 품질 방침 및 목표

<p><b>품 질 방 침</b></p> <p><input type="checkbox"/>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성을 확보한 지속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한다.</p> <p><input type="checkbox"/> 제품의 공급자 및 제품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업무를 수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품 질 목 표</b></p> <p><input type="checkbox"/> 단체표준 인증시스템 운영의 성공적 수행</p>
---

### ▣ 실천 의지

- ▶ 협회 직원 간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방침을 수행하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며,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개발하고 개선 유지한다.
- ▶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심사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침의 수립, 유지, 개선 및 경영검토를 통한 효과분석 등의 모든 활동은 경영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경영방침 달성을 위한 운영방침,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등의 정보를 전직원간 공유로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 ▶ 품질책임자는 조직상의 독립성을 갖고 품질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 협회는 KS Q ISO/IEC 17065 및 산업표준화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협회가 진다.
- ▶ 품질시스템의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갖는 책임자로서 인증본부장을 지명하며 제품인증기관 경영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2017. 05. 26.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_\_\_\_\_ (서명)



[별표 7]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제45조 관련)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 정	내 용	시 간	
		양성교육	정기교육 (기간)
경영간부	1) 단체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단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단체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시간 (3년)
품질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시간	16시간 (3년)
단체표준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 발굴 및 관리 3) 단체표준의 적부확인 4)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시간 (1년)
인증관리 담당자	1) 산업표준화법령 및 하위규정 2) 단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3)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인증심사 기법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5)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6) 인증심사 향상 및 개선방안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시간 (1년)

#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표준(심사,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인)

# 위 축 장

성 명 :

소 속 :

귀하를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평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년 05월 26일 ~ 2020년 05월 25일

20   년   월   일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회의록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공 람	본부장	부회장
장 소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대회의실		일 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단체 표준	명 칭		심 의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4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	
	번 호			<input type="checkbox"/> 제5조(단체표준인증위원회)	
참 석 자	사회				
	위원				
	관계자	단체표준담당			
토 의 사 항 요 약	순서	토의 내용			발언자
	1. 개회선언				
	2. 안건설명				
	3. 안건				
	4. 토의사항 및 질의				
	5. 결정사항				
	6. 폐회				
별첨					





<p style="text-align: center;"><b>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b></p> <div style="text-align: center;"><p>사진</p></div> <p style="text-align: center;"><b>홍길동</b></p> <p style="text-align: center;"><b>(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b></p>	<p style="text-align: center;"><b>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b></p> <p>소 속 :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년    월    일</p> <p>위 사람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11조 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유효기간 : 20    .    .    . ~ 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b>(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b></p>
--	--

앞 면

뒷 면





# 단체표준 인증서

인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증기간 :

인증제품 :

- 단체표준명 :

- 제품/모델명 :

- 인증 내용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인증업무규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61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302호

연락처 : (02)3453-7991

1. 최초인증일 : 20    년    월    일

2. 최종변경일 : 20    년    월    일

## 단체표준 인증심사 대장(예시)

년 도	업체명	공 장 심 사												제품시험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 2. 공장의 일반현황

### ○ 종업원(C) 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외국인 명 포함)

### ○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기 타 생 산 품		기타 인증 수	의무 ( )개 임의 ( )개
회 사 연 혁			
특 기 사 항	○ 공장심사 참석자		

### ○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생 산 능 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 산 실 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체표준인증제품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 요 원 자 재	(단위)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 3. 공장심사 평가항목

<b>1. 품질경영 :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b>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b>배점</b>	<b>평점</b>	<b>평가자의견</b>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b>(2.5점)</b>  * <b>비고</b> •경영책임자 :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1.2 [★ <b>핵심품질</b> ]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b>(5점)</b>  * <b>비고</b> :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 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및 단체표준	5.0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1.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내부심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b>(2.5점)</b>  * <b>비고</b>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b>(2.5점)</b>  * <b>비고</b> : 종업원 1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b>(2.5점)</b>  * <b>비고</b> : 제안 활동 및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2. 자재관리 :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견
<p>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주요 원자재, 부자재 등) 목록을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5점)</p>	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p>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한국산업표준을 활용하여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p>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p>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25점)</p> <p>* 비교: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p>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p>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교: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검사능력 :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p>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p>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5점)</p>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p>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교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p>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3. 공정·제조설비 관리 :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배점	평점	평가자의견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b>* 비교</b>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단체표준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입차)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25점)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b>* 비교</b> : 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4 <b>[★ 핵심품질]</b>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5점) <b>* 비교</b>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5 부적합품은 적절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25점) <b>* 비교</b> : 유형별 부적합 건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25점) <b>* 비교</b> •제조설비 :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b>* 비교</b> :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유행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25점) <b>* 비교</b>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유행유류의 선택기준, 유행유류의 양, 유행주기, 폐유행유류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설비유행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4. 제품관리 :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배점	점수	평가자의견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로트 품질 보증 규정 :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 제품관리 :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견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단체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5점)	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검사능력 :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자체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5 [★ 핵심품질]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5점)	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시험결과가 평균값을 산출할 수 없는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함.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비고 :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b>5. 시험·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b>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b>배점</b>	<b>평점</b>	<b>평가자의견</b>
5.1 [★ <b>핵심품질</b> ]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5점)	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b>비고</b> :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시험검사 주기를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b>비고</b>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점검 주기·점검방법 등)			
5.3 시험·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2.5점)	2.5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의견:
* <b>비고</b>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의견
<p>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5점)</p> <p>*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li> <li>•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li> <li>•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li> </ul> </p>	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p>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li> <li>•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li> </ul> </p>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p>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5점)</p> <p>*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li> <li>•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li> </ul> </p>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p>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2.5점)</p> <p>*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li> <li>•계획 :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공정·제품품질·설비관리·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 최근 3년간 실적 확인</li> <li>•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li> <li>•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li> </ul> </p>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p>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5점)</p> <p>*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li> <li>•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li> </ul> </p>	2.5		□ 적합, □ 보완, □ 부적합 의견:

#### 4. 자재관리 목록표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생산업체	변경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SPS KFGIA- 002- 1799	가스주입 단열유리	ESD-2	269	시료크기: n=2 겉모양, 이슬점 치수 이외 시험항목 n=1	12매  (BG-1,BG-2)	※ SPS-KFGIA-002-1799-2013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에 따름 ※ 시료치수(mm) 1) ESD-2 BG-1, BG-2 : (350×500)mm ※ 호칭 두께 : 22 mm ※ 재료판유리두께 : 10 mm ※ 가스층두께 : 12 mm
		EST-2	50	시료크기: n=2 겉모양, 이슬점 치수 이외 시험항목 n=1	12매  (WS-3,WS-4)	2) EST-2 BG-3, BG-4 : (350×500)mm ※ 호칭 두께 : 39 mm ※ 재료판유리두께 : 15 mm ※ 가스층두께 : 24 mm  저방사유리 1장 사용 ※ 단 표시사항은 제외 ※ 시료채취자 : (인)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KS Q ISO 24153(랜덤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름

다. 공시체 제작방법

- 공시체 제작방법 : SPS-KFGIA-002-1799 8.1항에 따름
- 공시체 규격 :
- 제작자 :

라. 시험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2017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판유리산업협회 : (인) 대 표 자 : (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6. 보완 / 부적합 보고서

( 보완 □ / 부적합 □ )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보완/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 공장심사보고서의 보완/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인)

대 표 이 사

(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인)

품질관리담당자

(인)

7.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 보완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 (공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폰		e-mail
평가항목 번호	보완/부적합 구분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심사원
	일반 품질	핵심 품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공장)명		대표자		(인/서명)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귀하				
※ 보완/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 한다.				

보완 /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보완/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증심사원	(인/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b>지위승계신고서</b>				처리기한
				30 일
신 고 자	①업 체 명		③전화번호	
	②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 자인 경 우에 만 기재)	⑥인증번호		⑦인증일자	20* 년 월 일
	⑧표 준 명		⑨표준번호	
	⑩종류(등급)			
	⑪호 칭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연월일	
⑫ 업체명				
⑬ 대표자				
<p>「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b>(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귀하</b></p>				
첨 부 서 류	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비 고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 의 경우	1. 단체표준인증서(우수단체표준확인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 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우수 단체표준 제품 확인서

제 조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공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단 체 표 준 번 호		단 체 표 준 명 (종 류 . 등 급)	

「산업 표준화법」 제 25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 조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단체표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17호 서식]

<b>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 기록부</b>							
						인증번호	
						인증품목	
						회사명	
<b>회 사 정 보</b>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공장규모	대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본 사	신청업체		TEL	FAX		
		소재지 ( - )					
	공 장	제조업체		TEL	FAX		
소재지 ( - )							
<b>업 체 정 보</b>	업체유형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판매(시공),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OEM,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식상장여부		<input type="checkbox"/> 상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형식승인취득		년 월 일	KS인증		년 월 일	
	해외표준취득		년 월 일	기타		년 월 일	
	주생산품		기업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종업원현황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1인당매출액				
	1인당부가가치		연구개발투자비용		%		
기타생산품		원자재비율		%			
<b>품 목 별 생 산 현 황</b>	표준번호					회사연력	
	생산능력(연)		(m <sup>2</sup> )	(m <sup>2</sup> )	(m <sup>2</sup> )		
	생산실적(연)		(m <sup>2</sup> )	(m <sup>2</sup> )	(m <sup>2</sup> )		
	판매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KS제품		(m <sup>2</sup> )	(m <sup>2</sup> )	(m <sup>2</sup> )		
	단체표준제품		(m <sup>2</sup> )	(m <sup>2</sup> )	(m <sup>2</sup> )		
<b>담 당 자 정 보</b>	성명		직위				
	부서		TEL/FAX				
	E-mail		휴대전화번호				
	자격증구분		자격증번호(취득일)		( 20 . . )		
<b>세 금 계 산 서 담 당 자</b>	성명		부서명(직책)				
	전화번호		E-mail				
<b>인 증 품 목</b>	인증번호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b>설 비</b>	제조/가공설비						
	시험/검사설비						
<b>사 후 관 리 현 황</b>	사후심사구분		심사일	공장심사	제품심사	심사결과	처분



# 서 약 서

본인은 귀 협회에 등록하여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에서 정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 및 직무교육을 준수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다.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귀 협회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한다.
- 라.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마. 본인은 단체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단체인증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 배척함으로써 신뢰받는 단체표준인증제도 정착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 바. 단체표준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에 위배되는 단체표준 인증 관련 사내교육, 지도/자문, 기술지도 등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인증단체명

인증 심사원

(인)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귀하**



## 단체표준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이하 "협회"이라 한다)와 ○○○ (이하"업체"이라 한다)는 협회와 업체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인증품목)

업체명	품목명(모델명)	인증일자

###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인증은 유지된다.

다만, 종류추가등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 (권리 및 의무)

- ① "을"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 ②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④ 제3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9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 제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 ①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

할 수가 있다.

④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 제7조 (정기심사)

①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1조(정기심사 등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② "을"은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④ 또한 "갑"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⑤ "을"은 정기심사전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후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 (종류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에 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종류추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조공장의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을"은 특별공장심사를 신청 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 제9조 (관련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갑"은 관련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을"에게 통보해야하며 통지방식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①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사후관리를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 (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 할 때 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제품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6조(처분)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증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을"에게 있다.

### **제12조 (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 한다. 또한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4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제15조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① "갑"은 "을"의 공장이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6조 (인증의 취소)**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7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7조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18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 **제19조 (인증 계약의 해제)**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의 게재 등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① “을”은 인증서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인증마크”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인증마크”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마크” 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20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21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회사명 :			
대표자 : 대 표	(인) 대표자 :			(인)

## 이의제기 및 불만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이의제기/ 불만사항	처리내용	작성자	확인자	비고

